

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. 4. 22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여성가족과장)
- 제출일자: 2021. 4. 8.
- 회부일자: 2021. 4. 9.
- 상정 및 의결: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1. 4. 22.)

2. 개정이유

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 및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달서구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심의보완 요청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친화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아동의 권리(생존권, 발달권, 참여권, 보호권) 추가(안 제2조)
- 나. 차별의 구체적인 요소 및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해 명시(안 제5조)
- 다. 아동영향평가실시 의무, 근거, 실시정책과 대상을 구체화(안 제10조)
- 라. 아동권리대변인의 구성과 역할 책무에 대해 구체적 명시(안 제11조)
- 마.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 조항 삽입(안 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유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
- 나.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지난 2018년 12월, 달서구는 ‘아동친화 도시’ 조성 사무를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함께 추진하고자 구성된 「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(이하 **협의회**)」에 가입하면서, 당시 「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(이하 **규약**)」을 준수키로 한 바 있음.
- 그동안 동 협의회 내·외부 환경 변화와 이에 맞춰 동 규약의 개정(2019. 9. 24.)이 있었으며, 달서구는 개정된 규약들 역시 수용하여 ‘아동친화 도시’ 조성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하여왔음.
- 최근 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심의 보완 요청이 있었으며 집행부는 이를 수용키로 하고 그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바, 이는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의지(정책 방향)가 반영된 것인 바,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